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은 필수



사례 1.

지자체와 결식아동 급식사업 위탁업무를 체결한 한 사회복지관, 급식 배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관 관장이 배우자와 지인을 급식배달 유급 봉사자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배달 봉사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 언론사는 이 복지관에 대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관 전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제기한 의혹을 기사화했다. 관장이 공익요원을 개인적인 일에 사용했고,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집행 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는 직원을 강제 해고했다는 것이다.

사례 2.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모 사회복지법인, 지난해 법인 내에서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이사장 일가가 각종 횡령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이후 많은 언론사가 이 법인에 대해 추가 취재한 후 보도를 했다. 그런데, 모 언론사는 이 법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부실 급식과 인권유린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이사장의 아들이 새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 인권 유린을 고발한 영화 ‘도가니’ 이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이전과 달라졌다. 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예전과 달리 더 강화됐다. 미담 기사 일변도였던 뉴스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복지단체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복지단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났을지 모른다.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회복지법인은 충분히 다른 불법이나 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편견이 뇌리에 박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나면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또 사회복지법 인측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기사화 하게 된다. 낙인효과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도 비슷하다. 조정신청이 된 두 사건 보도는 비슷한 포맷으로 이뤄졌다. 이미 보도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법인에 대해 제보자들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화했다. 언론사가 사실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왜 보도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입장은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신청인의 항의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조정대상 보도가 그다지 시급성을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신청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심리가 열렸다. 첫 번째 사례 신청인은 심리 중 울음을 터뜨렸다. 조정대상 보도로 인한 억울함을 울음으로 대신했다. 두 번째 사례 신청인은 조목조목 사실관계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사건 담당 중재부는 조정대상 보도에 신청인측의 주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보도 내용 중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종결이 되면 추후에 보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두 번째 사건 담당 중재부도 신청인 측 반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이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선임된 날짜가 잘못 보도됐으므로 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건 다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사가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신청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고발성 기사를 작성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 팩트다. 그리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판을 받을 대상에 대한 적절한 반론도 반드시 포함해야 온전한 기사가 된다. 그래야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비판 받는 이도 아프지만 수긍이 가는 보도가 되는 법이다.